

#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3월 0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자플랫폼 역할수행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명칭·위치 및 시설, 업무 및 조직 (안 제5조~안 제6조)
- 개관 및 이용, 사용허가 및 제외 등 (안 제7조~안 제8조)
- 사용료 및 감면·반환, 사용자의 설비 등 (안 제9조~안 제10조)
- 위탁운영 (안 제11조)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본 조례안은

KTX 진부역에 설치한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명칭 및 위치, 업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검토결과,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1일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음.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56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듯이

사용료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임.

다만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2013.10.18. 법제처 의견제시)

따라서, 본 조례안 제9조의 문화·관광플랫폼 사용료를 규칙으로

위임함에 있어 집행부서 제시 사유가 법제처 의견의 상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안 제5조제3항제5호에

“농·특산물 직매장(단, 판매물품은 평창군 내 생산품목에 한한다.)”을 신설하며,

기존 제5호인 “그 밖에 군수가 안내창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6호로 변경

○ 안 제9조제1항은 후단에 “이 경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추가

①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신설

문화·관광플랫폼 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1. 올림픽 존(zone)	1일	50,000	
	오전	30,000	
2. 작은문화예술터	오후	30,000	
3. 회의실	야간	20,000	

<비고>

가. 1일은 8시간, 오전·오후·야간은 각각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가목의 해당 시간을 일부 사용할 경우에도 그 시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자플랫폼 역할수행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플랫폼(platform)”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KTX진부역의 구역 안에 축조된 건축물을 무상 양도 받아 설치하고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관광객을 위하여 군의 문화·관광(이하 “문화·관광”이라 한다)에 관한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관광 관계 법령”이란 문화·관광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 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 다. 「관광진흥법」
  - 라. 「공연법」
  - 마. 그 밖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법률
3. “공연이나 전시, 행사”란 문화·관광의 건전한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예

술적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의 무대공연이나 작품·사진 등 전시 및 이와 관련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KTX진부역 여행자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명칭·위치 및 시설)** ① 군수가 군민·관광객의 효과적 문화·관광을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문화·관광플랫폼의 명칭은 평창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센터의 별칭은 “SPACE창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에 둔다.

③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림픽 존(zone)
2. 작은문화예술터, 작은도서관
3. 여행자 휴게 공간
4. 회의실, 사무실
5. 농·특산물 직매장(단, 판매물품은 평창군 내 생산품목에 한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안내창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업무 및 조직)** ① 센터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에게 홍보·안내 및 편의제공
2. 사용허가 및 사용자로부터 해당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3.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의 공연이나 전시, 행사의 유치 및 초청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관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체계적·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소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범위·처리방법, 소장과 필요한 직원의 정원·충원·복무·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직원의 충원·복무·보수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개관 및 이용)**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자의 야간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다만, 각각 그 날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군수는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센터의 게시

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군민·관광객 등은 제5항에 따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이용하는 군민·관광객 등(이 조례에서 “이용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의 이용질서를 지켜야 한다.
2.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음주·흡연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4. 관련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5. 그 밖에 관리책임자(직원을 포함한다)가 설명하는 이용방법,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⑤ 군수는 이용자 또는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본인, 다른 이용자 또는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3. 흥기, 위험한 물품 등을 몸에 지닌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사용허가 및 제외 등)** ①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관·단체 등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같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해당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기관·단체 등(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 및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행사나 집회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상 지장을 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 관계 법령 및 센터의 설치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운영규정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④ 해당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제1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파손·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된 때 군수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반환)** ①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나.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 다. 이용자들의 무료입장, 관람·감상 등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할 경우
- 라. 센터에서 유치 또는 초청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개최할 경우
-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100분의 50 감경

- 가. 군민 또는 군민단체가 센터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 나.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라고 인정할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 홍보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첨·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 제2호의 비용부담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 등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사용자가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설비를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4항제5호에 따라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모집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설치한 문화·관광플랫폼과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수행체제로 정정·보완하는 등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문화·관광플랫폼 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1. 올림픽 존(zone) 2. 작은문화예술터 3. 회의실	1일	50,000	
	오전	30,000	
	오후	30,000	
	야간	20,000	

<비고>

가. 1일은 8시간, 오전·오후·야간은 각각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가목의 해당 시간을 일부 사용할 경우에도 그 시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